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2023. 8. 30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8. 18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나. 상정의결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- 가. 제안이유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내에서 의미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타 장학금 조례와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○ 제3조제1항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화
○ 제3조제3항 타장학금 수혜자의 지급 기준 마련
○ 제7조제2항 타장학금 수혜자의 수령액 결정 기준 정비
- 다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- 함 의 : 해당기관 없음
○ 기 타 :
- 입법예고(2023. 7. 14. ~ 2023. 8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현행 조례는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일부개정안은 제3조제1항과 제3항, 제7조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3조제1항은 1년이상 새마을지도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봉사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, 1년 미만이라도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을 경우,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조문으로 “~자” 라는 표기를 “~사람”으로 변경하고, 「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“새마을지도자의 경력”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」의 부분을 「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“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”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」로 정비하려는 것임.
- 집행기관(주민자치과)이 제출한 개정안 중 안 제3조제1항은 당초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립 초교 및 중학교 자녀는 장학금 지급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데, 이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기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3조제3항에는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정부 장학금 또는 기업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있을 경우, 이 금액이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는 이 조례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반영함.
- 현행 조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고교생 45만원, 대학생 9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, 중복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상의 금액보다 적은 소액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, 차액만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안 제7조제2항을 명확히 정비한 것임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관련의안번호

제223호

제안일자 : 2023.8.30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.

1. 수정이유

- 안 제3조(장학금 지급대상)제3항 및 안 제7조제2항을 조문내용에 맞게 재배치 및 간결화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내용

-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조문 수정(안 제7조제3항)

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<단서 신설>

----- 다만,
해당 장학금의 수령액
이 본 장학금 보다 적
은 경우에는 지급할
수 있다.

제7조(장학금) ① (생략)
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,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.

제7조(장학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.

<신 설>

제7조(장학금) ①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,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“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”를 “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”으로, “재학 중인 경우를”을 “재학중인 사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새마을지도자의 경력”을 “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,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<u>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</u>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<u>재학 중인 경우</u>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<u>새마을지도자의 경력</u>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</u> 및 ----- ----- <u>재학 중인 사람</u> ----- . ----- ----- -----<u>새마을지도자는 그 경력</u>이 ----- ----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7조(장학금) ① (생 략)</p> <p>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,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장학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,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</p>

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